

대학혁신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대학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총괄적 점검과 성과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등을 다루기 위한 대학혁신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

1.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학내 재정지원사업의 총괄적 점검
2.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
3.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및 환류
4. 기타 대학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투자 계획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
제2조의 1(회의) ① 위원장은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위원장은 총장, 부위원장은 **부총장**으로 한다. (**개정 2023.9.1.**)

③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산학교육처장, 입학홍보처장, **대학혁신실장**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대학내 주요 사업의 사업단장 및 재학생으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**개정 2022.10.1., 2023.9.1.**)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4조(임기)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명시하여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유지의무) 위원은 학교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